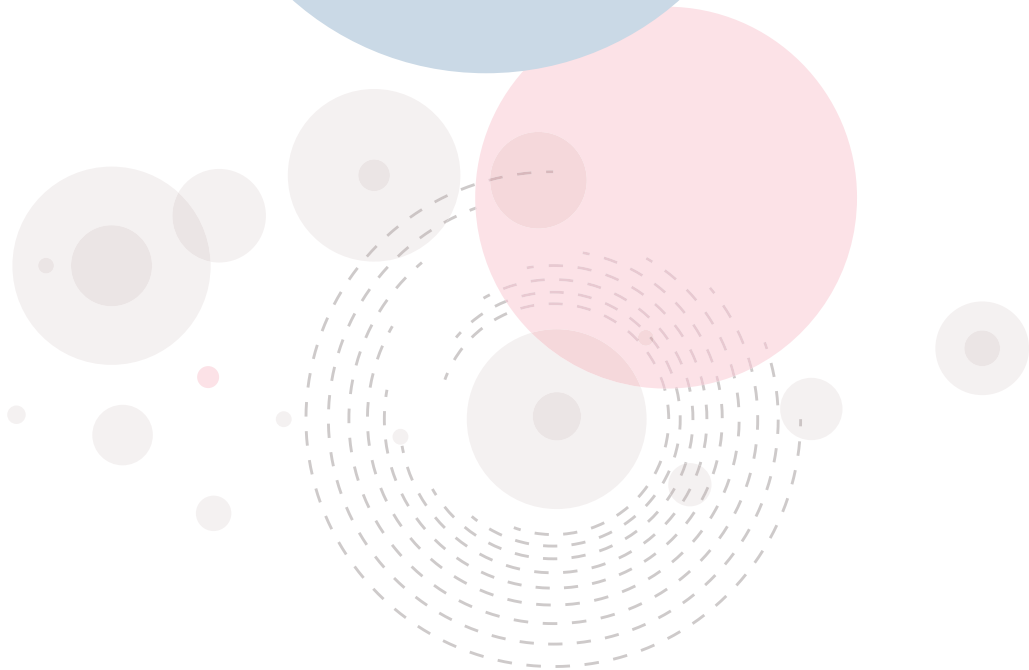


2023
도시보건대학원
편람



2023
도시보건대학원
편람



교 훈 진리 창조 봉사

U, 그대,
Our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Star! 별이 되어라!

희
망,

UOS에서
펼치다-

교육목적

본교는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본 대학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법에 그 이념적 바탕을 두고 서울시립대학교 교훈에 제시된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구현한다.

- 01 폭넓은 교양과 심오한 학문적 이론 및 창의적 전문기술을 지닌 **지성인**을 기른다.
- 02 성실한 근면을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인격을 갖춘 **민주 시민**을 기른다.
- 03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의 적응력과 새 문화의 창조력을 함양하여 서울특별시와 국가 및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른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Contents

06	설립목적 및 연혁
07	조직도 및 교수진
08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
24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과정
25	학위논문 체제 및 양식
32	학생지원 서비스 및 수강신청 안내
38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6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시행세칙
72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안내

설립목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은 공공보건의를 선도하는 대학원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연구자를 양성하며,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보건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아울러 종합적인 보건문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수행한다.

연혁

2017

- 12.27 도시보건대학원 신설(3개 전공) (정원 20명)
 - 도시보건역학 전공
 - 도시보건정책관리 전공
 - 도시사회건강 전공

2018

- 02.28 2018학년도 제1기 입학식
- 05.23 대한보건협회,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MOU 체결

2019

- 08.23 도시보건대학원 제1차 건강정책포럼 개최
- 12.04 도시보건대학원 제2차 건강정책포럼 개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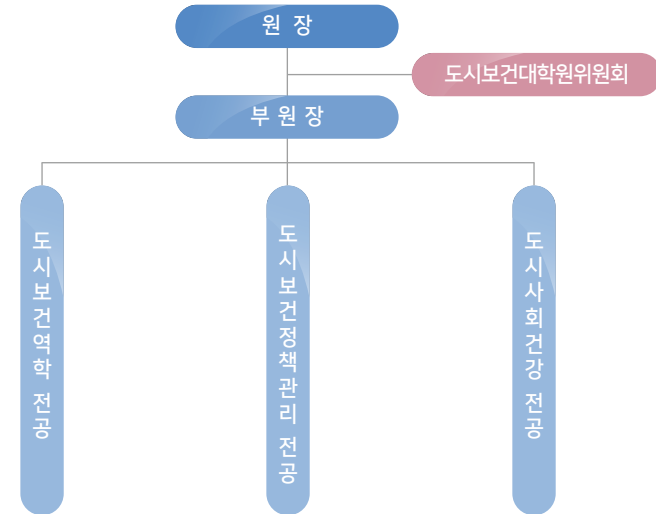
- 08.21 도시보건대학원 제1기 졸업식
- 10.14 도시보건대학원 제3차 건강정책포럼 개최

- 2021
 - 05.13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이사회 개최
 - 06.14 제1기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 입학식
 - 08.20 도시보건대학원 제2기 졸업식
 - 09.27 제1기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 수료식
 - 10.28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12.03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2022

- 07.07 제2기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 입학식
- 08.22 도시보건대학원 제3기 졸업식
- 11.03 제2기 도시건강정책 최고위 과정 수료식

도시보건대학원 조직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진

직명	성명	전공	학위
교수	임준	보건정책 및 관리, 건강증진, 보건 기획 및 사업	의학박사
교수	박상신	역학	의생명과학박사
교수	최슬기	건강증진	보건학박사
교수	김우현	보건경제, 보건정책	경제학박사

도시보건대학원 도시보건역학 전공 주임교수 : 박 상 신
 도시보건대학원 도시보건정책관리 전공 주임교수 : 김 우 현
 도시보건대학원 도시사회건강 전공 주임교수 : 최 슬 기

2023학년도 학사력

※ 2023학년도 학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대학원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월								2(목)	제1학기 시작
								2(목)~8(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3(월) ~ 16(목)	1학기 외국어·종합시험 신청
								25(토)	1학기 외국어·종합시험 실시
								29(수)	수업일수 1/4(일반휴학 만기)
4월									
								3(월) ~ 7(금)	논문, 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5월								1(월)	논문·비논문 본심사 및 구술시험 신청
								8(월) ~ 12(금)	논문 중간심사
								18(목) ~ 24(수)	보강주간 ※대체수업일 5.1(월)⇒ 5.22(월), 5.5(금)⇒ 5.19(금), 6.6(화)⇒ 5.23(화)
6월								5(월) ~ 9(금)	논문 본심사, 비논문 구술시험
								15(목) ~ 21(수)	1학기 기말시험
								21(수)	제1학기 종료
								22(목)	여름방학
7월								1(토)	성적제출 마감
								3(월)	성적열람
								3(월) ~ 7(금)	성적정정
								13(목)	논문, 비논문 인쇄본 제출 마감
8월								21(월) ~ 25(금)	제2학기 수강신청
								21(월) ~ 25(금)	제2학기 휴학신청
								22(화)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23학년도 학사력

※ 2022학년도 학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대학원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월								1(금)	제2학기 시작
								1(금) ~ 7(목)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13(수) ~ 15(금)	2학기 외국어·종합시험 신청
								23(토)	2학기 외국어·종합시험 실시
								27(수)	수업일수 1/4(일반휴학 만기)
10월									
								4(수)~6(금)	논문, 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11월								17(금) ~ 23(목)	보강주간, ※대체수업일 9.28(목)⇒ 11.23(목), 9.29(금)⇒ 11.17(금) 10.3(화)⇒ 11.21(화), 10.9(월)⇒ 11.20(월)
								6(월) ~ 10(금)	논문 중간심사
12월								4(월) ~ 8(금)	논문 본심사, 비논문 구술시험
								15(금)~21(목)	2학기 기말시험
								21(목)	제2학기 종료
								22(금)	겨울방학
								31(일)	성적제출 마감
24년 1월								2(화)	성적열람
								2(화) ~ 8(월)	성적정정
								11(목)	논문, 비논문 인쇄본 제출 마감
24년 2월								19(월) ~ 23(금)	2024.제1학기 수강신청
								19(월) ~ 23(금)	2024.제1학기 휴학신청
								22(목)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교과과정

도시보건역학 전공(Urban Epidemiology)

도시인구집단에서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분포와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요인들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다양한 역학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건강 증진, 보호,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개발 능력을 겸비한 도시보건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과과정

도시보건역학 전공 (Urban Epidemiology)

구 분	교과번호	교 과 목	학 점	강 의	실 습
전공필수	PH001	보건학개론	3	3	0
	PH002	보건역학론	3	3	0
	PH007	보건통계 및 연구방법론	3	3	0
	PH023	보건통계자료처리 실습론	2	2	0
전공선택	PH004	도시감염병역학	2	2	0
	PH011	대학원 논문연구	0	0	0
	PH012	만성질환역학	2	2	0
	PH013	보건영양역학	2	2	0
	PH014	신체활동역학	2	2	0
	PH015	근거중심 보건학의 이해	2	2	0
	PH016	도시사회역학	2	2	0
	PH017	도시환경보건학개론	2	2	0
	PH018	직업안전보건학	2	2	0
	PH019	건강영향평가론	2	2	0
	PH020	도시환경생태학과 건강	2	2	0
	PH021	역학조사론	2	2	0
	PH022	보건통계자료처리론	2	2	0
	PH051	역학연구 및 논문작성세미나	3	3	0
	PH054	보건조사방법론	3	3	0
	PH055	보건의료의 계량분석	3	3	0

교과목 개요

PH001 보건학개론 (Urban Public Health)

보건학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보건학의 주요 관점인 보건역학, 보건연구방법과 건강증진 전략, 환경과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총론적으로 다룬다.

PH002 보건역학론 (Epidemiology)

보건 분야에서 응용되는 역학의 개념과 영역을 이해하여, 이를 기초로 질병 발생과 이와 관련된 원인적 연관성을 역학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

PH007 보건통계 및 연구방법론
(Statistics in Public Health and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

보건통계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보건학 분야의 연구에서 얻어진 실제 자료를 실습을 통하여 통계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유형의 연구논문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PH023 보건통계자료처리 실습론
(Practice in Public Health Statistics and Data Management)

보건통계학의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직접 보건통계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PH004 도시감염병역학 (Urban Epidemiology of Infectious Diseases)

감염병의 생태학적,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인구집단에서 감염병의 현황과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과 관리대책 개발에 대하여 강의한다.

PH011 대학원논문연구 (Writing and Publishing Public Health Papers)

보건관련 주제의 논문에서 각 구성내용(제목, 초록,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토의, 참고문헌)들의 작성원칙들에 대해 학습한다. 완성된 논문의 출판과정을 이해하며 이러한 작성법과 절차를 자신의 논문작성 및 출판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H012 만성질환역학 (Epidemiology of Chronic Disease)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만성 질환(비전염성질환)의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만성병 예방을 위한 도시사회 기반 접근방식을 이해한다.

PH013 보건영양역학 (Nutritional epidemiology)

보건영양역학의 정의와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건강 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학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지역사회 영양개선 프로그램과 보건영양정책 결정과 관련된 연구동향 등을 학습한다.

PH014 신체활동역학 (Physical activity epidemiology)

신체활동역학의 정의와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건강 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대도시 사회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들의 신체활동 상태를 객관성 있게 다루어 지역사회 신체활동 촉진 정책을 개발하고 향상 하는 지식 및 방법을 습득케 한다.

PH015 근거중심 보건학의 이해 (Evidence-Based Public Health Care)

근거중심보건의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제공되는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수준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익혀,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PH016 도시사회역학 (Urban Social epidemiology)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들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회역학의 일반적인 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개인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 가는지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PH017 도시환경보건학개론 (Fundamentals Urban Environmental Health)

환경보건학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수질, 대기, 실내공기, 산업위생, 환경독성, 환경미생물, 노출평가 등과 같은 대도시 환경보건 문제를 집중 파악하고, 이로 인한 보건학적 영향과 그 대책에 관하여 논의한다.

PH018 직업안전보건학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직업환경 및 직업조건의 개선, 근로자의 건강 평가, 건강증진, 직업병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등 산업보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학습한다.

PH019 건강영향평가론 (Health Impact Assessment)

다양한 요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관련된 예방 관련자료 및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방법론과 적용방안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제반 원리를 학습한다.

PH020 도시환경생태학과 건강 (Urban Environmental Ecology and Health)

감염병,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과 같은 도시환경 보건문제와 환경생태학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에 대한 건강문제를 탐구한다.

PH021 역학조사론 (Epidemiologic Survey)

감염병의 원인과 분포, 전파 경로, 감염 위험 요인, 발생 지역이나 집단의 특성 등에 대한 역학자료 수집절차에 관해 학습하며, 이러한 역학조사 자료의 처리 분석 및 논리적 해석에 대해 이해한다.

PH022 보건통계자료처리론 (Statistical Analysis of Public Health Data)

보건통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수집된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 및 해석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습득한다.

PH051 역학연구 및 논문작성세미나 (epidemiologic research & scientific writing seminar)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이미 역학 및 자료처리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출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PH054 보건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in Public Health)

보건학 연구에서 이용하는 조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론을 다룬다. 설문 개발, 질적 면접, 자료 관리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연구 실천역량을 기른다.

PH055 보건의료의 계량분석 (Econometrics in Healthcare)

보건통계의 기초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 효과 분석 및 역학적 인과관계 추정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량분석 방법론을 이해한다. 이론적 배경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분석 과정을 함께 학습한다.

도시보건정책관리 전공(Urba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도시보건정책관리 전공은 보건의료체계와 제도의 구성 및 정책 형성과정과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 또한 건강 및 질병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건강향상을 위한 실천방법에 대하여 연구함. 보건정책의 기본 개념과 가치, 정책 형성과정과 결정, 정책 평가 등을 연구하고 학습하여, 시민들의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과과정

도시보건정책관리 전공 (Urba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구 분	교과번호	교 과 목	학 점	강 의	실 습
전공필수	PH001	보건학개론	3	3	0
	PH002	보건역학론	3	3	0
	PH003	도시보건정책관리론	3	3	0
	PH007	보건통계 및 연구방법론	3	3	0
전공선택	PH005	의료보장론	3	3	0
	PH009	보건행정세미나	3	3	0
	PH010	지역사회건강증진세미나	3	3	0
	PH011	대학원 논문연구	0	0	0
	PH024	정부관료제와 보건행정	2	2	0
	PH025	지방자치와 보건행정	2	2	0
	PH026	보건의료 인력관리론	2	2	0
	PH027	보건의료 조직론	2	2	0
	PH028	병원관리학	2	2	0
	PH029	지방자치와 보건재정	2	2	0
	PH030	건강증진론	2	2	0
	PH031	비교보건의료제도론	2	2	0
	PH032	보건경제학	2	2	0
	PH033	보건정책분석평가론	2	2	0
	PH034	고령화와 장기요양정책	2	2	0
	PH035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이해	2	2	0
	PH051	역학연구 및 논문작성세미나	3	3	0
	PH052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관리	2	2	0
	PH054	보건조사방법론	3	3	0
	PH055	보건의료의 계량분석	3	3	0

교과목 개요

PH001 보건학개론 (Urban Public Health)

보건학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보건학의 주요 관점인 보건역학, 보건연구방법과 건강증진 전략, 환경과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총론적으로 다룬다.

PH002 보건역학론 (Epidemiology)

보건 분야에서 응용되는 역학의 개념과 영역을 이해하여, 이를 기초로 질병 발생과 이와 관련된 원인적 연관성을 역학적 인 개념에서 이해한다.

PH003 도시보건정책관리론 (Introduction to Urban Public Health Policy Management)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기법을 다루고, 이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도시보건정책 및 관리대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접근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보건정책의 실제수립과정을 사례로 정책 분석 및 정책 평가 기법을 분석함으로 도시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PH007 보건통계 및 연구방법론
(Statistics in Public Health and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

보건통계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보건학 분야의 연구에서 얻어진 실제 자료를 실습을 통하여 통계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유형의 연구논문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한다.

PH005 의료보장론 (Social Security in Health)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하여 고찰한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다른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

PH009 보건행정세미나 (Seminar for Urba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보건의료행정 및 관리를 위한 기초과정으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결정과 행정과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한다. 보건행정의 의의, 범위, 방법, 보건의료체계의 개관, 보건의료와 정부의 역할, 보건의료와 법규, 인사관리 및 재문 관리등에 대한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H010 지역사회건강증진세미나 (Seminar for Community Public Health Promotion)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이론습득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토론하여, 이를 토대로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근거중심적인 보건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PH011 대학원 논문연구 (Writing and Publishing Public Health Papers)

보건관련 주제의 논문에서 각 구성내용(제목, 초록,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토의, 참고문헌)의 작성원칙들에 대해 학습한다. 완성된 논문의 출판과정을 이해하며 이러한 작성법과 절차를 자신의 논문작성 및 출판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H024 정부관료제와 보건행정 (Public Bureaucracy &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정부관료제에 관한 이론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논한다. 정부관료제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보건정책결정과 보건행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이론 등을 학습한다.

PH025 지방자치와 보건행정 (Local Self-Government &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보건의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주민참여 기회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행정 및 정책에 관한 현실적인 이슈들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내의 공공보건행정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한다.

PH026 보건의료 인력관리론 (Policy & Management for Healthcare Personnel)

급격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보건의료 인적자원수급 및 질적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제반 전략들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및 인력관리 전략을 학습한다.

PH027 보건의료 조직론 (Health Organization & Management)

일반 조직이론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조직 내의 권력과 조직통제, 조직과 환경의 관계가 보건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조직의 관리능력을 전망한다.

PH028 병원관리학 (Introduction to Hospital Management)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병원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 병원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병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리 기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PH029 지방자치와 보건재정 (Local Self-Government & Health Care Finance)

지역발전을 위한 보건재정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보건재정의 개념과 본질, 보건재정확충, 보건재정 조정제도 및 자립도 현안문제 등을 다룬다.

PH030 건강증진론 (Health Promotion)

공중보건, 보건교육, 건강증진의 개념, 역사 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건강증진활동의 전략과 방법,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건강증진활동의 내용 및 건강증진사업의 기획과 평가 방법 등을 다룬다.

PH031 비교보건의료제도론 (Comparative Studies of Health Care System)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제도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 관하여 고찰한다.

PH032 보건경제학 (Health Economics)

경제학의 기본이론과 분석방법을 토대로 실제적 보건의료문제를 보건경제이론으로 분석하고 경제학적 해법을 모색한다.

PH033 보건정책분석평가론 (Health Policy Analytics & Evaluation)

정책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파악하고, 각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보건정책수립방법을 탐구한다.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정책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PH034 고령화와 장기요양정책 (Aging and Policy of Long-Term Recuperation)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하고, 국·내외 장기요양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재정, 자원, 서비스, 거버넌스 등)와 관련 정책들을 탐구한다.

PH035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이해 (Public Health Law)

보건의료분야에 적용되는 법률의 기본개념과 체계를 이해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종사자로서 양식 있는 태도를 함양시킨다.

PH051 역학연구 및 논문작성세미나 (epidemiologic research & scientific writing seminar)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이미 역학 및 자료처리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출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PH052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관리 (Public Health Care Policy and Management)

보건의료의 공공성 개념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다루며, 공공보건의료 인력, 시설 등 자원의 개발과 제공체계, 그리고 재원조달 등에 관한 정책과 관리에 대해서 공부한다.

PH054 보건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in Public Health)

보건학 연구에서 이용하는 조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론을 다룬다. 설문 개발, 질적 면접, 자료 관리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연구 실천역량을 기른다.

PH055 보건의료의 계량분석 (Econometrics in Healthcare)

보건통계의 기초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 효과 분석 및 역학적 인과관계 추정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량분석 방법론을 이해한다. 이론적 배경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분석 과정을 함께 학습한다.

도시사회건강 전공(Urban Social Health)

도시사회건강 전공은 건강과 질병 및 의료문제를 사회구조적 특성이나 집단 간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진.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이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참여, 보건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건강증진 기획과 평가 등에 대한 연구와 실천, 적용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과과정

도시사회건강 전공 (Urban Social Health)

구 분	교과번호	교 과 목	학 점	강 의	실 습
전공필수	PH001	보건학개론	3	3	0
	PH002	보건역학론	3	3	0
	PH007	보건통계 및 연구방법론	3	3	0
	PH008	도시보건사회학	3	3	0
전공선택	PH006	도시보건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2	2	0
	PH010	지역사회건강증진세미나	3	3	0
	PH011	대학원 논문연구	0	0	0
	PH015	근거중심 보건학의 이해	2	2	0
	PH016	도시사회역학	2	2	0
	PH019	건강영향평가론	2	2	0
	PH030	건강증진론	2	2	0
	PH033	보건정책분석평가론	2	2	0
	PH036	건강도시이론	2	2	0
	PH037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2	2	0
	PH038	도시환경과 건강불평등	2	2	0
	PH039	다수준 건강증진	2	2	0
	PH040	보건교육 세미나	2	2	0
	PH041	의료와 대중매체	2	2	0
	PH042	건강행동이론	3	3	0
	PH043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3	3	0
	PH044	지역사회보건사업론	2	2	0
	PH045	도시와 노인건강	2	2	0
	PH046	정신보건과 건강증진	2	2	0

구 분	교과번호	교 과 목	학 점	강 의	실 습
전공선택	PH047	여성과 건강	2	2	0
	PH048	청소년과 건강	2	2	0
	PH049	장애인보건학	2	2	0
	PH050	도시와 신체활동	2	2	0
	PH051	역학연구 및 논문작성세미나	3	3	0
	PH054	보건조사방법론	3	3	0
	PH055	보건의료의 계량분석	3	3	0

교과목 개요

PH001 보건학개론 (Urban Public Health)

보건학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보건학의 주요 관점인 보건역학, 보건연구방법과 건강증진 전략, 환경과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총론적으로 다룬다.

PH002 보건역학론 (Epidemiology)

보건 분야에서 응용되는 역학의 개념과 영역을 이해하여, 이를 기초로 질병 발생과 이와 관련된 원인적 연관성을 역학적인 개념에서 이해한다.

PH007 보건통계 및 연구방법론 (Statistics in Public Health and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

보건통계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보건학 분야의 연구에서 얻어진 실제 자료를 실습을 통하여 통계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유형의 연구논문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PH008 도시보건사회학 (Urban Sociology for Public Health)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통하여 건강행동이나 치료법의 선택, 의사와 환자 관계, 병원조직, 의료제도 및 의료문제를 사회구조적 특성이나 집단 간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분석한다. 이에 보건사회학적 패러다임과 접근시각으로 보건의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PH006 도시보건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Urban Public Health and Communication Strategy)

도시화에 따른 건강증진의 주요 주제와 특성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보건 정보전달 및 의료 정보의 이해 등과 같은 보건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제들을 다룬다.

PH010 지역사회건강증진세미나 (Seminar for Community Public Health Promotion)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이론습득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토론하여, 이를 토대로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근거중심적인 보건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PH011 대학원 논문연구 (Writing and Publishing Public Health Papers)

보건관련 주제의 논문에서 각 구성내용(제목, 초록,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토의, 참고문헌)의 작성원칙들에 대해 학습한다. 완성된 논문의 출판과정을 이해하며 이러한 작성법과 절차를 자신의 논문작성 및 출판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H015 근거중심 보건학의 이해 (Evidence-Based Public Health Care)

근거중심보건의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제공되는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수준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익혀,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PH016 도시사회역학 (Urban Social epidemiology)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들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회역학의 일반적인 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개인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어 가는지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PH019 건강영향평가론 (Health Impact Assessment)

다양한 요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관련된 예방 관련자료 및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방법론과 적용방안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제반 원리를 학습한다.

PH030 건강증진론 (Health Promotion)

공중보건, 보건교육, 건강증진의 개념, 역사 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건강증진활동의 전략과 방법,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건강증진활동의 내용 및 건강증진사업의 기획과 평가 방법 등을 다룬다.

PH033 보건정책분석평가론 (Health Policy Analytics & Evaluation)

정책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파악하고, 각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보건정책수립방법을 탐구한다.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정책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PH036 건강도시이론 (Theories of Healthy City)

건강도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폭 넓은 관점에 기반하여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이다.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 건강증진 지원적 환경, 지역사회단체의 참여와 활동, 보건의료 체계 정립 등에 대한 영역을 다룬다.

PH037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Patient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in Healthcare)

보건의료의 질 관리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 원리와 개념들을 이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조직에서 환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PH038 도시환경과 건강불평등 (Urban Environment and Health Inequality)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사회환경의 특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 정책, 기술의 통합적 접근을 다룬다. 건강형평성 및 건강불평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건강형평성 측정방법을 학습한다. 도시에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논의한다.

PH039 다수준 건강증진 (Multi-level Health Promotion)

사회생태학적 틀에서 건강증진의 개념, 원칙, 전략, 기획과 평가의 개괄을 다룬다. 특히, 다수준 지역사회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평가의 동향을 국내외 최신 연구 사례와 함께 파악하고 논의한다.

PH040 보건교육 세미나 (Public Health Education Seminar)

보건교육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및 이론을 다루며, 보건교육의 필요성, 보건교육법, 보건교육매체의 개발 및 활용방법을 다루며, 보건교육의 각 영역별 최신 연구 성과들을 소개한다.

PH041 의료와 대중매체 (Healthcare & Mass Media)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건강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그 활용분야를 이해한다.

PH042 건강행동이론 (Health Behavior Theory)

건강행태에 대한 기본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 행태 이론과 모형에 대해서 학습한다.

PH043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Planning & Evaluation of Health Promotion Program)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이론, 프로그램 평가 기획,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토의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보건사업의 기획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PH044 지역사회보건사업론 (Community Public Health Service)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제 사업에 대해 고찰하고, 도시지역단위의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사회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PH045 도시와 노인건강 (Urban and Health Care for Elderly)

노령화를 다각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노령화가 개인, 가족,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도시노인보건 분야의 주요 논점들 - 성공적 노화, 건강 결정 요인, 건강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 노인보건 서비스, 노년기의 윤리 문제 등에 대해 토론한다.

PH046 정신보건과 건강증진 (Mental Health and Health Promotion)

건강한 인간의 행동과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국내·외 정신건강의 역학, 정신건강/질환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신건강증진 전략,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리체계, 그리고 정신 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 논의한다.

PH047 여성과 건강 (Women's Health and Illness)

여성건강의 개념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여성건강과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보건학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건강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PH048 청소년과 건강 (Adolescent's Health and Illness)

청소년 건강의 개념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보건학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 건강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PH049 장애인 보건학 (Public Health for Disabled Persons)

장애인 보건의를 다각도 측면에서 고찰하고, 장애인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보건의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 환경이 뒷받침하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PH050 도시와 신체활동 (Urban and Physical Activity)

도시화 및 산업화는 신체활동 부족을 가져오며 이는 건강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민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알아보고, 신체활동 부족에 의한 건강 영향 평가 그리고 도시환경에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PH051 역학연구 및 논문작성세미나 (epidemiologic research & scientific writing seminar)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이미 역학 및 자료처리론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출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PH054 보건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in Public Health)

보건학 연구에서 이용하는 조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론을 다룬다. 설문 개발, 질적 면접, 자료 관리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연구 실천역량을 기른다.

PH055 보건의료의 계량분석 (Econometrics in Healthcare)

보건통계의 기초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 효과 분석 및 역학적 인과관계 추정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량분석 방법론을 이해한다. 이론적 배경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분석 과정을 함께 학습한다.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과정



전문학위명

학과 및 전공	전문학위명
도시보건역학 전공 도시보건정책관리 전공 도시사회건강 전공	보건학 석사

[별첨] (개정 2008.8.5, 2009.1.19)

학위논문 체제 및 양식

1. 학위논문의 체제

1) 논문 기재 순서

- (1) 표지
- (2) 제출문
- (3) 인준서
- (4) 국문초록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는 외국어초록)
- (5) 속표지(표지와 동일)
- (6) 목차
- (7) 기호, 수표 및 도표의 목차 (있는 경우에 한함)
- (8) 본문
- (9) 참고문헌
- (10) 부록, 기타 (있는 경우에 한함)
- (11) 영문초록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는 국문초록)
- (12) 감사문 (있는 경우에 한함)

2) 작성 요령

- (1) 표지
 - ① 제목과 성명은 국문으로 하며(한자 가능) 논문제목의 글자크기는 22포인트로 하고, 부제의 글자크기는 16포인트로 한다. 영문제목이 있는 경우 국문제목 밑에 표기한다.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외국어로만 표기한다.
 - ② 논문 발간연도는 학위 수여일이 속하는 연, 월까지 표기한다.
 - ③ 표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배열한다.
- (2) 제출문
 - ①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일자는 연, 월까지 표기한다.
 - ②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 있게 배열한다.
- (3) 인준서
- (4) 국문초록, 외국어초록
 - ① 본문이 국문인 경우는 앞에 국문초록, 본문 뒤에 외국어초록을,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앞에 외국어초록, 뒤에 국문초록을 작성한다.
 - ②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내는 주요어(keyword)를 표기한다. 주요어는 논문 검색 시 색인으로 가능한 단어를,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5) 페이지 매기기

- ① 표지와 제출문, 인준서, 국문초록에는 페이지를 매기지 않으며, 목차, 기호설명, 수표 및 도표목차는 소문자로 숫자로 일련번호를 매긴다.(예 : i, ii, iii, ...).
- ② 본문부터 감사문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를 매긴다. 이 때 본문 중의 도표나 테이블에도 페이지를 매긴다.

(6) 글자 크기와 문단 모양

- ① 초록, 본문 등의 내용 글은 11포인트로 하고, 장의 제목은 16포인트, 절의 제목은 14포인트, 각주는 9포인트로 하며, 그 외의 글자크기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내용 글의 줄 간격은 200% 더블 스페이스로 한다.

(7) 목차

- ① 목차에는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등을 포함시키며, 제목 다음에 점선을 긋고 페이지 수를 단다.

예)

목차	i
제1장 서론	1
제2장(제목)	10
제1절(제목)	10
제2절(제목)	20
1. (제목)	20
2. (제목)	30
제3장(제목)	80
제4장 결론	100
부록	120
영문초록	130

- ② 장, 절, 항의 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한다.

예 i) 제1장 서론	예 ii) 1. 서론
제2장	2.
제1절	1.1
1.	1.1.1
2.	1.1.2
1)	1.1.2.1
2)	1.1.2.2
(1)	1.1.2.2.1
(2)	1.1.2.2.2
①	1.1.2.2.2.1
②	1.1.2.2.2.2
i)	1.1.2.2.2.2.1
ii)	1.1.2.2.2.2.2

2. 주와 참고문헌

1) 본문의 주 달기

- (1) 주는 각주(脚註 ; footnote)의 형태로 해당 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각 장의 말미에 미주(尾註)로 달 수도 있다.
- (2) 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주의 수효가 많은 경우에는 각 장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일 수 있다.
- (3) 주에서 다른 글을 인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양식에 의거하여 인용한 글의 서지 사항을 기록한다.
 - ① 저서의 경우 : 저자명, 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 인용페이지.
예) 한영우, 1994, 한국민족주의 역사학, 일조각, 서울, 88-90쪽
 - ② 구미 서적일 경우 저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Turton, R. K., 1995, Principle of Turbomachinery, second ed., Chapman & Hall, London, pp.55-56.
 - ③ 저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이름을 모두 열거하거나, 아무개 외(영문 일 경우는 et. al)라고 줄인다.
예) 손정식, 임덕호, 1999, 경제학개론, 법문사, 서울.
손정식 외, 1999, 경제학개론, 법문사, 서울.
 - ④ 논문의 경우 : 필자명, 게재지 출판년도, "논문명", 게재지명, 출판사, 출판지, 인용페이지.
예) 鄭在貞, 1998, "교육개혁과 위기에 몰린 역사교육", 韓國의論理, 玄音社, 서울, 30-31쪽
 - ⑤ 학술논문집에 실린 논문일 경우 게재된 논문집의 권, 호수를 분명하게 밝힌다.
예)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추세와 도시문제 발생", 역사와 현실, 제28호, 한국역사연구회, 서울, 191-192쪽.
Mueller, U. R., 1992, "Comparison of turbulence measurements with single, X and triple hot-wire probes", Experiments in Fluids, vol. 13, pp.208-216.
 - ⑥ 한 사람이 같은 해에 저술한 여러 편의 논저를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연간(年刊) 뒤에 a, b, c, ...를 붙여 구별한다.
예) 김영옥, 1989a, "중세국어 준비법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89, 국어연구회. 김영옥, 1989b, "'-소서'와 형태소분석", 이용주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228-235쪽.
- (4) 일련번호의 각주 내에서 일단 완전한 형식의 주를 기입한 뒤 동일한 논저를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약식주를 사용한다. 약식주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앞에서 인용한 논저를 재차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 연도 다음에 앞의 책(또는 앞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op. cit.)이라고 쓴다. 이 때 前掲書, 前掲論文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예) 김영옥, 1989b, 앞의 논문, 235쪽.
Mueller, U. R., 1992, op. cit., pp.50-51
 - ②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했던 논저를 다시 인용한 경우에는 필자명과 연도를 생략하고 위의 책(또는 위의 논문,

영문일 경우에는 ibid.)이라고만 쓴다. 역시 上揭書, 上揭論文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ibid.는 같은 페이지의 바로 앞 주에 인용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판 과정에서 페이지가 바뀔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바로 앞 번호의 주에 인용된 것이면 페이지가 달라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참고문헌

- (1) 본문이나 주에서 인용한 논저는 모두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킨다.
- (2) 참고문헌의 서지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은 각주의 경우와 같다.
- (3) 참고문헌은 동양문헌(그 가운데서는 한국문헌을 가장 앞에 놓는다), 서양문헌의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또는 abc순으로 배열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저서, 논문, 기타 등으로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안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배열한다.
- (4)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성(surname)을 앞에 적고 이름(given name)을 뒤에 적은 다음 abc순으로 배열한다.
예) T. S. Elliot → Elliot, T. S.
- (5) 일본인과 중국인 저자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경우에는 현지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 (1) 본문에서 도표와 테이블의 위치는 언급된 본문 부분 근처 또는 각장의 말단에 위치한다.
 - (2) 부록을 작성할 경우, 2개 이상의 항목이 있으면 알파벳 대문자로 분류한다.
 - (3) 도표가 있는 경우 표 1-1 또는 Figure A.1 등과 같이 별도의 번호를 붙인다.
- * 학위논문체제 및 양식은 학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OOOO OOO OO OOOO OO

-서울시를 중심으로-

(영문)

2023년 8월 → 학위수여일이 속하는 년, 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도시보건역학 전공
김 보 건

OOOO OOO OO OOOO OO

-서울시를 중심으로-

(영문)

지도교수 정 교 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 제출일자는 년, 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도시보건역학 전공
김 보 건

김보건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지도교수 인

2023년 6월 → 제출일자는 년, 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학생 지원 서비스

학생 지원 서비스

학생서비스 센터 (☎ 6490-6260)

1. 학생증 발급

- 신입생 - 소정의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및 행정실에 제출
 재학생 - “대학행정시스템”에서 학교생활 > 학생증 발급 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센터에 방문
 (재발급시 수수료 발생)

2. 국제학생증

- Home > 학생지원 > **장학/등록** > 국제학생증
 신청서 작성(www.isic.co.kr/uos/) → 신청정보 입력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계좌이체, 가상계좌) 수수료 발생
 입금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교내 학생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ISIC 수령

3. 증명서 발급

- 증명서발급은 5가지가 있음(제증명발급기 / Desk / FAX / 인터넷 / 우편)
 - 데스크 및 제증명발급기
 - 팩 스: 근처 동사무소(18시까지)에 가면 되며,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
 - 인터넷: Uos홈 > 대학생활 > IT서비스 > 인터넷증명발급 >
 증명발급바로그기(2000년 전 학번은 이름 + 주번,
 이후 학번은 통합로그인, ID or P/W 분실 시 Wise에
 비번 찾기 이용. 안되면 전산과 6490-6606 문의)
 - 우편발급: 본인 Wise > 학교생활 > 증명서발급신청처리
 - 대리발급 시 위임장(도장 지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연락처

학생과 (☎ 6490-6221~2)

1. 학자금 대출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도서관

1. 중앙도서관

실명	층	열람석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정기간행물실	1	89	09:00~18:00	휴관	휴관
제1개가열람실	2	18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휴관	
제2개가열람실	2	42			
제3개가열람실	2	60			
도시과학자료실	2	12			
제1자유열람실	3	398	연중 24시간 교차 개방 (홀·짝수제)		
제2자유열람실	3	352			
제3자유열람실	3	407	연중무휴 06:00~23:00		
제4자유열람실	3	264			
스터디룸 외	3	93	연중무휴 24시간 개방		
논문실, 참고열람실	4	51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휴관	휴관
전자정보실	4	153			
A/V ROOM	4	80			

2. 법학전문도서관 (법학관 4~6층)

실명	층	열람석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법학라운지	4	72	06:00~21:00	09:00~18:00	휴관
대학원열람실	5	90	연중무휴 06:00~23:00		
정보검색실	5	25			
법학자료실	6	90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휴관	휴관

3. 경영경제전문도서관 (미래관 3층)

실명	층	열람석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경영경제자료실	3	43	학기중 09:00~21:00 방학중 09:00~18:00	학기중 09:00~13:00 방학중 휴관	휴관
그룹스터디룸 및 열람실	3	178			

포털 가입 안내

포털(<https://portal.uos.ac.kr>) 가입

① 포털(<https://portal.uos.ac.kr>) 접속 > 로그인 화면에서 “포털계정등록” 클릭

②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인증”,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

③ 본인명의 인증서나 핸드폰이 아닌 학생은 아이핀(<http://i-pin.kisa.or.kr>)을 등록하여 사용

④ 신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포털에서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s://wise.uos.ac.kr>) 이용

① 포털(<https://portal.uos.ac.kr>) 접속 > 로그인 > 메뉴에서 “대학행정” 클릭

② ①의 방법 또는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s://wise.uos.ac.kr>) 접속 > 로그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동일)

③ 포털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되면 대학행정정보시스템도 비밀번호가 변경됨

대학행정정보시스템(학생전용) 화면 구성 (<http://wise.uos.ac.kr>)



※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uosdoc/index.html>)사용자 등록 안내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방법

기 간: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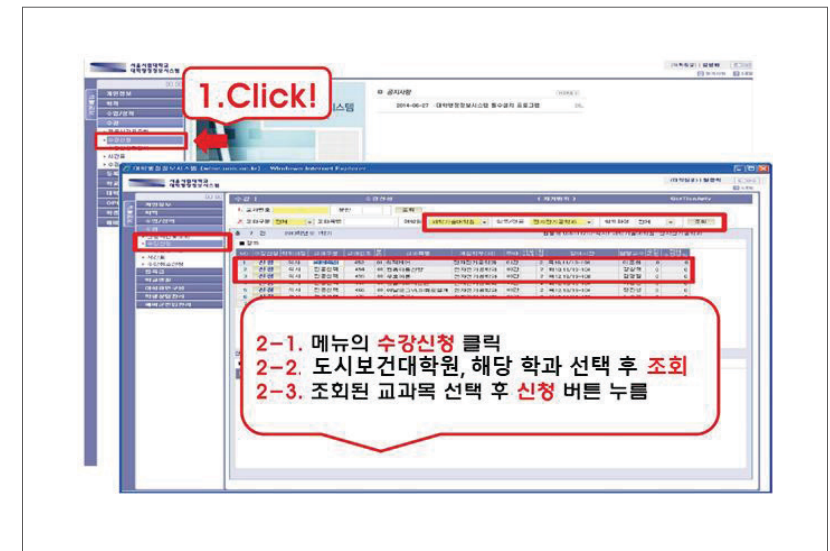
방 법

① UOS포털(<https://portal.uos.ac.kr>) 로그인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메뉴 선택

② 수강업무 → 수강 신청

※ 수강신청 시 수강시간표, 교과번호, 교과목, 분반 확인

※ 수강신청 과목수 만큼 신규버튼을 눌러 생성 후 수강신청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7. 10. 16.	규정	제908호	개정	2008. 2. 18.	규정	제 941호
개정	2008. 7. 21.	규정	제965호	개정	2008. 11. 13.	규정	제 988호
개정	2008. 11. 24.	규정	제991호	개정	2009. 1. 19.	규정	제1005호
개정	2009. 7. 3.	규정	제1029호	개정	2009. 7. 30.	규정	제1040호
개정	2009. 8. 14.	규정	제1046호	개정	2009. 9. 16.	규정	제1051호
개정	2009. 10. 21.	규정	제1058호	개정	2009. 11. 6.	규정	제1061호
개정	2010. 1. 15.	규정	제1076호	개정	2010. 3. 2.	규정	제1091호
개정	2010. 4. 26.	규정	제1094호	개정	2010. 7. 15.	규정	제1108호
개정	2010. 11. 29.	규정	제1137호	개정	2011. 1. 11.	규정	제1152호
개정	2011. 1. 20.	규정	제1159호	개정	2011. 2. 28.	규정	제1179호
개정	2011. 10. 21.	규정	제1224호	개정	2012. 2. 24.	규정	제1242호
개정	2012. 3. 26.	규정	제1256호	개정	2012. 7. 4.	규정	제1274호
개정	2012. 11. 1.	규정	제1310호	개정	2013. 1. 30.	규정	제1327호
개정	2013. 6. 14.	규정	제1346호	개정	2013. 7. 16.	규정	제1349호
개정	2013. 10. 22.	규정	제1361호	개정	2013. 11. 26.	규정	제1365호
개정	2014. 4. 14.	규정	제1401호	개정	2014. 6. 26.	규정	제1454호
개정	2014. 8. 21.	규정	제1471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1478호
개정	2014. 10. 30.	규정	제1480호	개정	2014. 12. 30.	규정	제1493호
개정	2015. 1. 8.	규정	제1495호	개정	2015. 2. 26.	규정	제1499호
개정	2015. 5. 22.	규정	제1518호	개정	2015. 7. 2.	규정	제1523호
개정	2015. 7. 31.	규정	제1543호	개정	2016. 3. 7.	규정	제1585호
개정	2016. 5. 10.	규정	제1605호	개정	2016. 7. 4.	규정	제1623호
개정	2016. 12. 8.	규정	제1653호	개정	2017. 8. 23.	규정	제1691호
개정	2017. 8. 24.	규정	제1694호	개정	2017. 9. 5.	규정	제1701호
개정	2017. 12. 27.	규정	제1724호	개정	2018. 2. 28.	규정	제1737호
개정	2018. 10. 18.	규정	제1772호	개정	2018. 11. 13.	규정	제1776호
개정	2018. 11. 14.	규정	제1778호	개정	2019. 2. 15.	규정	제1806호
개정	2019. 4. 23.	규정	제1817호	개정	2019. 5. 7.	규정	제1825호
개정	2019. 6. 11.	규정	제1829호	개정	2019. 10. 23.	규정	제1861호
개정	2019. 11. 6.	규정	제1865호	개정	2019. 1. 12.	규정	제1867호
개정	2020. 2. 17.	규정	제1901호	개정	2020. 5. 11.	규정	제1924호
개정	2020. 9. 9.	규정	제1950호	개정	2020. 10. 15.	규정	제1961호
개정	2021. 4. 30.	규정	제2009호	전부개정	2021. 8. 3.	규정	제2026호
개정	2021. 9. 30.	규정	제2046호	개정	2022. 1. 26.	규정	제2062호
개정	2022. 5. 26.	규정	제2089호	개정	2022. 9. 29.	규정	제2109호
개정	2022. 11. 24.	규정	제2121호	개정	2022. 12. 13.	규정	제2131호
개정	2023. 2. 1.	규정	제21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체 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① 본교 대학원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자아의 실현 및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각 대학원은 그 설립취지와 운영목적에 맞는 교육목적을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제3조(교육조직) ① 본교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며, 각 대학원의 세부구성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과학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②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9. 29.>

③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부원장에 겸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9.>

④ 각 대학원의 교육조직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9. 29.>

제4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및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통합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제5조(협동과정학과, 학·연·산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 ①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 간 협동과정학과”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 학·산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협동과정프로그램 및 융합전공) ① 복수의 계열 또는 복수의 학과가 공동으로 학과의 설치 없이 “협동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된 전공의 심화 교육과 융합 연구 등을 위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협동과정프로그램 및 융합전공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시행세칙

으로 정한다.

제7조(학·석사연계과정) ① 각 대학원은 본교의 학사과정과 해당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학과와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전공 및 협동과정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운영조직) ① 제3조에 규정된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통합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미래혁신 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통합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학칙과 제 규정 등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각 대학원 간 총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원 통합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

④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통합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각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정절차) ① 이 학칙의 개정은 통합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교무위원회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② 개정의 내용이 개별 대학원에만 국한된 경우 각 대학원별 위원장이 교무위원회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예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은 매 학기 학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 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③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동일전공 재학생으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석·박사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과 다른 교과과정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수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교과목인 '전공과정 선수과목'을 입학 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학·연·산 협동과정학과 및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하는 과정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⑥ 각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위종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본교 전임교원은 본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고, 본교 조교는 소속 학과와 동일한 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제13조(입학 전형·사정·허가)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심사로 구성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④ 입학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4조(정원 외 입학) ① 총장은 제12조에 규정된 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외 입학생이 제적이나 자퇴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편입학)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입학과 편입학의 취소) 총장은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학과·전공의 변경) ① 학과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 및 전공의 변경은 전출 및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주임교수의 허가 및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전과 및 전공 변경은 소속 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개정 2022. 1. 26.〉

② 전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26.〉

제18조(휴학)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 또는 복무휴학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

②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장기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근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때에는 제출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입영일 또는 복무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까지로 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신·출산, 육아(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관련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질병 또는 해외·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휴학제한기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년(4학기) 이내로 하되,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휴학기간은 제24조제3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의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영 또는 복무, 29일 이상의 장기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제20조(복학) ①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복학생의 등록금 등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정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지났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3.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0(B0) 미만인 학생
4.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제23조(재입학) ① 자퇴한 사람이나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입학원 접수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자 중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석사 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이내에 이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④ 제18조제3항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 전후 휴학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⑤ 그 밖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26.〉

제3장 학업연한

제24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의 단축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학년도와 학기) ① 매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제1학과와 제2학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월 1일 이전에 시작할 수 있다.

제2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휴업일) ① 하계방학, 동계방학, 공휴일, 개교기념일, 토요일은 정기휴업일로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학전형 등 학사관련 행사가 있는 경우
2. 비상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등 록

제28조(등록과 등록금) ① 학생은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9조(대학원연구생 등록) ① “대학원연구생”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연한과 최저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등록을 필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대학원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수혜 자격을 가진다.

1.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통한 학위논문의 제출
2. 학위취득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
3.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 이용
4. 재학생에 준하는 보험의 적용

④ 그 밖의 대학원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연구과정생 등록) 제54조의 대학원연구과정생은 연구기간 동안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금 납부방법과 반환) ①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금을 1회에 100분의 40을, 2회에 100분의 30을, 3회에 100분의 30을 납부한다. 다만, 학생이 원할 경우 선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자는 1회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적을 보유한다. 다만, 1회분 또는 2회분 까지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3회분 등록금 기한까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호에 따라 제적된다.
2. 차등납부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다. 다만, 4학점 이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에 규정된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학생이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휴학 중인 학생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5장 교육과정

제32조(교육과정 및 이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을 편람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학기별 취득학점) 각 대학원의 학기별 취득학점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학점과 출석)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F등급을 부여한다.

제35조(학점의 인정) ① 학생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학과·전공과정·협동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전에 타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2조제4항의 ‘전공과정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이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점의 교류와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수강신청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취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과와 전공에 따른 수강 신청의 변경대상 교과목과 학점 수 제한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강신청에 따른 폐강기준) ① 개설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단,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3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의 분류는 별표 6과 같다.

② 추가시험 등으로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 확정시까지 ‘미완(0)’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4항의 ‘전공과정 선수과목’과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평가한다.

④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성적등급 및 평점평균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⑤ 100점 만점 기준의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별표 8의 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에 따른다.

제39조(과정별 최저이수학점 및 수료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업성적의 평점이 2.0(C0) 이상인 경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 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과정의 수료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장 학위수여

제40조(학위청구자격과 학위논문)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재학생 또는 대학원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
2. 연구윤리서약서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3. 종합시험 합격
4. 외국어시험 합격. 다만,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부과 여부를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5. 기타 소속 대학원과 학과가 시행세칙으로 정한 요건

②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와 미술학석사 학위, 음악학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등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및 심사료) ① 제출된 해당 학위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명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학위취득연한) 수료 후 학위취득연한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3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① 학생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지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제출을 요구하는 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도교수의 자격과 논문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학위수여) ①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대학원에서도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 11과 같다.

③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과정포기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원이 정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총장은 각 대학원이 정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45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대학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6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1.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사회,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4.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류는 각 대학원 학위수여 구분에 따르되 수여 대상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및 논문제출 제한) ① 총장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을 대필·도용·표절로 판단한 경우,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학생활동과 장학금

제4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본교 대학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각 대학원 원우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징계) ① 전임교원 및 교내 모든 단위 부서의 장(5급 이상 공무원)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 연구생)에 대하여 해당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경징계(교내봉사, 근신)와 중징계(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로 구분하며, 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퇴학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봉사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30시간 이내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봉사활동
2. 근신 : 수업 등 활동이 금지되며, 7일(1일 8시간한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의 봉사활동
3. 유기정학 :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4. 무기정학 : 29일 이상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5. 퇴학 : 학생의 지위 상실
 - ③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 학생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 징계의 절차, 징계의결, 관련 서식 작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해당 대학원으로, 대학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 징계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위원회로 본다.
 - ④ 징계사무와 관련된 문서 및 징계의결대장은 해당 대학원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51조(포상) 학생으로서 특히 모범이 되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장학금) 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보조받는 학생은 학생처장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 ③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공개강좌와 연구과정

제53조(공개강좌) ① 정상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대학원은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시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연구과정) ① 제2조의 교육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대학원연구과정생은 해당 대학원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 연구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④ 총장은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원연구과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⑤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5조(위임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2026호, 2021. 8.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별표 1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표와 별표 9 수료 최저이수학점표의 대학원 박사과정 36학점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제42조의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46호, 2021. 9.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2호, 2022. 1.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89호, 2022. 5.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09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조교수가 부원장을 겸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직의 발령 종료일까지 겸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121호, 2022. 11.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1호, 2022. 12. 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2호, 2023. 2.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21.9.30., 2022. 5. 26. 2022. 12. 13., 2023.2.1.>

대학원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표(제8조 관련)

구분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석사과정 입학정원	박사과정 입학정원	합계
특수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 도시보건역학		×	
			- 도시보건정책관리		×	
			- 도시사회건강		×	
			소 계	20	0	20

[별표 제2호](개정 2008.11.13, 2011.2.28, 2012.3.26., 2012.11.1., 2017.12.27.)

재학연한표(제24조제3항 관련)

대학원명	재학연한	비 고
도시보건대학원	석사과정 : 4년	총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1년 연장 가능

[별표 제3호] (개정 2011.1.20.)

등록금 차등납부기준표(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신청학점	납부금액
학점 없는 교과목을 신청한 자	등록금의 1/6
1~3학점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별표 제4호] (개정2011.1.11., 2011.1.20)

등록금 반환기준표(제31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제5호] (개정 2008.2.18, 2008.7.21, 2008.11.13, 2008.11.24, 2009.10.21, 2010.3.2, 2010.4.26, 2011.2.28, 2012.3.26, 2012.11.1, 개정 2013.11.26, 2015.2.26, 2017.12.27.)

학기별 취득학점표(제33조 관련)

대학원명	학기별 최대학점	학기별 최소학점	비 고
도시보건대학원	석사과정 : 11학점	2학점	

※ 다만 계약학과, IUDP등은 학기별 최대학점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14차 법규조정위원회 수정안)

[별표 제6호]

성적등급 및 평점표

등 급	평 점
A +	4.5
A o	4.0
B +	3.5
B o	3.0
C +	2.5
C o	2.0
F	0

[별표 제7호]

등급 및 평점 환산기준표

등 급	평 점	환산점수	등 급	평 점	환산점수
A+	4.5	100	C+	2.5	80
	4.4	99		2.4	79
	4.3	98		2.3	78
	4.2	97		2.2	77
	4.1	96		2.1	76
Ao	4.0	95	Co	2.0	75
	3.9	94		1.9	74
	3.8	93		1.8	73
	3.7	92		1.7	72
	3.6	91		1.6	71
B+	3.5	90	F	1.5	70
	3.4	89		1.4	69
	3.3	88		1.3	68
	3.2	87		1.2	67
	3.1	86		1.1	66
				1.0	65
				0.9	64
				0.8	63
Bo	3.0	85		0.7	62
				0.6	61
				0.5	60
	2.9	84		0.4	59
	2.8	83		0.3	58
	2.7	82		0.2	57
	2.6	81		0.1	56
				0.1 미만	0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3.24→환산점수 87.4, 평점 4.08→환산점수 95.8

[별표 제8호]

점수 환산 기준표(제38조제5항 관련)

점 수	환산등급
96~100	A+
91~95	Ao
86~90	B+
81~85	Bo
76~80	C+
71~75	Co
70 이하	F

[별표 제9호] <개정 2008.11.13, 2009.10.21, 2010.3.2, 2011.2.28, 2012.2.24, 2012.3.26, 2012.11.1, 2013.11.26, 2017.12.27.>

수료 최저이수학점표(제39조 관련)

등 급	평 점	환산점수
도시보건대학원	논문과정 : 24학점 비논문과정 : 33학점	

[별표 제10호](개정 2008.11.13, 2009.10.21, 2010.3.2., 2010.4.26, 2010.11.29, 2011.2.28, 2012.3.26, 2012.11.1., 2015. 1. 8, 2016.12. 8, 2017.12.27.)

수료 후 학위취득연한표(제42조 관련)

대학원명	학위취득연한
도시보건대학원	석사과정 : 6년

[별표 제11호] <개정 2021.9.30., 개정 2022. 12. 13. 2023.2.1>

대학원 학과 및 전공별 학위명표

구분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석사학위	박사학위
특수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 도시보건역학 - 도시보건정책관리 - 도시사회건강	보건학 석사	×

[별지 제1호서식, 특수대학원 석사: 국문] (개정 2009.7.30., 2019. 2. 18.)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보건학 석사(○○○○ 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석사 전문학위를 수여함.

20○○.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
학위 ○ ○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서울시립대 (석)

석제 호

[별지 제1호서식, 특수대학원 석사: 영문] (신설 2009.7.30) (개정 2009.8.14., 2019.2.18.)



Be it known tha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Health
in (영문 전공명)

is hereby conferred upon
(영문 성명)

in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ability to complete research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of the University of Seoul,

○○○○ ○○, 20○○

(대학원장 서명)

○ ○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총장 서명)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No:

Date:

※ 학위명과 전공명이 중복될 경우 학위명만 명시

[별지 제1호서식, 대학원 융합전공 석사: 국문] (신설 2020.5.11.)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보건학 석사(○○○○ 전공)
(○○ 융합전공 이수)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석사 전문학위를 수여함.

2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
학위 ○ ○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서울시립대 (석)

박제 호

[별지 제1호서식, 대학원 융합전공 석사: 영문] (신설 2020. 5. 11.)



Be it known tha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Health
in (영문 전공명)
(Completion of OO Interdisciplinary Major)

is hereby conferred upon
(영문 성명)

in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ability to complete original research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of the University of Seoul,

○○○○ ○○, 20○○

(대학원장 서명)

○ ○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총장 서명)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No:

Date:

※ 학위명과 전공명이 중복될 경우 학위명만 명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2017.12.27. 규정 1727호

개정 2019.5.7. 규정 1826호

개정 2020.12.7. 규정 1970호

전부개정 2022.5.26. 규정 20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통합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학 제반 이론과 실무를 교수·연구하고, 도시보건과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전공 및 교육조직) ① 대학원에는 도시보건역학, 도시보건정책관리, 도시사회건강 전공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전공별 주임교수 각 1명을 두며, 학사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들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육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석사과정은 논문과정과 비논문과정으로 구분한다. ③ 논문과정, 비논문과정 간 변경은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도시보건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보건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시행세칙 및 대학원 개별사항에 대한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전공과정의 신설·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징계,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학원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대학원장과 부원장 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대학원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입학 및 학적관리

제1절 입학

제6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전임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제7조(제출서류 및 전형료) ①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
2. 학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1부
3.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연구계획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6.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증된 재정보증서 1부
2.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3. 지원자 또는 재정 보증인의 은행예치금 잔고증명서 1부
4. 부모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원본 1부

③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 사정 · 허가)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일반전형 : 석사과정
2. 특별전형 : 학칙 제14조에 따른 정원 외 입학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심사로 하되,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시행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전형은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의 정원 외 입학전형에 따른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 ⑤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9조(배점 및 평가점수) ① 평가점수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 ②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배점은 각 100점으로 한다.③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2절 학적관리

제10조(입학허가의 취소) 학칙 제16조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11조(일반휴학)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 해외·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자·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영 또는 복무 휴학)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복학과 등록금)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

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2. 학칙 제22조제3호·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에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이 불허된 사람이 1년 경과 후 다시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전공의 선택 및 변경) ① 전공은 2개 학기 이수 후 2주 이내에 신청하고, 전공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공의 변경은 학칙 제17조에 따른다.

제16조(수업연한) 석사과정 학생은 최소 2년 6개월(5학기)의 수업연한동안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원연구생

제17조(대학원 연구생 등록) ① 학칙 제29조제1항의 등록은 학기단위로 한다.

②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및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
2. 학교의 도서관·실험실 등 제반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
3.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

③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청구논문 및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대학원연구생 증명서 등의 발급) 대학원연구생에게는 대학원연구생증명서와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의 이수

제19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간, 주말에 개설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교과목 이수) 수강과목은 정해진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한다.

제21조(수강신청) 매학기 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1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학점교류

제22조(본교 각 대학원 간 학점교류) ① 본교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내 교류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이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본교 외 대학원과 학점교류) ①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타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 이수는 매 학기당 3학점,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교 대학원에서 수강 가능한 동일명칭 또는 동일 내용의 교과목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4조(학점교류 이수인정학점)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의 성적이 3.0(B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교류로 취득한 총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석사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각 전공별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 중 3과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목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한다.

⑥ 종합시험은 전 전공영역에 걸친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문제를 이수과목 전반에 걸쳐 출제한다.

⑦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목당 위원은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⑧ 종합시험의 합격인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도 인정한다.

⑨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1.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사람
2.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영어를 공용어 또는 상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외국어시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항의 출제 및 채점위원을 구성해 대학원 주관으로 외국어시험을 실시한다.
2. 본교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영어 강좌를 수강한다.
3. 다음의 외부공인시험으로 대체한다.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아이엘츠(IELTS),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지텔프(G-TELP), 한국어능력시험(TOPIK)

⑥ 출제 및 채점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자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명으로 구성하는 때에는 출제문제를 2배수로 한다.
2. 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또는 본교 외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⑦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 대학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
2. 본교 대학원영어 강좌 수강 : B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3. 외부공인시험 대체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표 6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매년 3월과 9월의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제27조(비용징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응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2 절 논문과정

제28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서약서)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연구윤리서약서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0조(논문과정 지도교수) ①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수 후 2주 이내에 지도교수 신청을 완료하고,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은 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학생이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과정 지도교수로 위촉·선정할 수 있고, 그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본교 및 타교의 명예교수는 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⑤ 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 및 휴직교수는 기존 논문과정 지도교수 외에 새로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제31조(학위논문 심사위원) ①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제30조의 논문과정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학위논문 심사 및 기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1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과정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3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학위논문 심사(중간발표)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34조(심사위원의 정족수) 석사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제35조(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심사는 중간발표, 본심사로 이루어진다.

③ 심사위원장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부가 준비된 경우에 본심사를 진행한다.

제36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논문 체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는 사람은 논문과정 지도교수와 소속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부의 심사용 학위논문 사본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방법)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의 평점 각 80점 이상과 심사위원 3명의 평점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38조(구술시험)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고,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39조(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추후 학위논문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발표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중간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제40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최종 학위논문 작성과 제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논문과정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이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학위논문의 인쇄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 4:6배판(18.5cm×25.5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 또는 단면 중 택일
4. 표지색깔 : 흑색
5. 겉표지·제출문·인증서

가. 겉표지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되, 명조체(또는 명조체 계열) 2호(22포인트) 활자로, 석사학위논문은 은색, 박사학위논문은 금색(하드커버에 한함)으로 인쇄한다.

나. 제출문과 석사학위인증서는 각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 재본식 : 클로스 양장

7. 논문의 분량(매수) : 제한 없음

⑤ 최종 완성된 학위논문은 각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에 하드커버 5부와 원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학위논문 심사로 납부 및 반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본심사 전에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료를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학위논문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발표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43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3절 비논문과정

제45조(비논문연구계획서) 비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자격)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연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사람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학위취득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취득연한을 경과한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비논문과정 지도교수) ① 비논문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 이수 후 2주 이내에 지도교수 신청을 완료하고,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다만, 당해 학생이 연구하는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로 위촉·선정할 수 있고, 그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본교 및 타교의 명예교수는 비논문과정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 ⑤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는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임, 휴직, 장기출장,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내·외 파견(국내 연구년 제외) 및 휴직교수는 기존 비논문과정 지도교수 외에 새로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제48조(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① 전공 주임교수는 비논문 보고서 제출자가 있을 경우 제47조의 비논문과정 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후보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 주임교수가 제청하는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후보를 비논문 보고서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으로 위촉하며,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 활동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비논문 보고서 심사위원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대학원 전임교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사정과 전공 분야의 특수성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1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비논문 보고서 심사와 관련한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50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비논문 보고서 심사(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논문 보고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51조(심사위원의 정족수) 비논문 보고서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한다.

제52조(비논문 보고서 심사 절차) ① 비논문 보고서 심사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되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비논문 보고서 심사는 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③ 심사위원장은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부가 준비된 경우에 구술시험을 진행한다.

제53조(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①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는 본 대학원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비논문 보고서 심사를 받는 사람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와 소속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부의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사본을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한다.

④ 심사용 비논문 보고서 제출 시 본교에서 지정하는 표절프로그램 시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평가방법) 비논문과정 구술시험의 평가는 가/부로 하되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5조(재심사) 비논문 보고서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추후 비논문 보고서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를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에서 비논문연구계획서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비논문 보고서 심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5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최종 비논문 보고서 작성과 제출) ① 비논문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비논문과정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비논문 보고서가 한글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논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체제 및 양식은 본대학원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른다.

④ 최종 완성된 비논문 보고서 1부를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학위수여 사정과 보고) 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의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자격 확인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위수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의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학위는 취소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재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9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캠퍼스 안내

넓고 푸른 친환경 캠퍼스에서
세계의 기운을 가슴에 담다



- | | | | |
|------------|-----------------|----------|--------------|
| 1 전농관 | 2 제 1공학관 | 3 건설공학관 | 4 창공관 |
| 5 인문학관 | 6 배봉관 | 7 대학본부 | 8 자연과학관 |
| 10 경농관 | 11 제 2공학관 | 12 학생회관 | 13 학군단 |
| 14 과학기술관 | 15 21세기관 | 16 조형관 | 18 자작마루 |
| 19 정보기술관 | 20 법학관(도시보건대학원) | 21 중앙도서관 | 22 생활관 |
| 23 건축구조실험동 | 24 토목구조실험동 | 25 미디어관 | 27 대강당 |
| 28 운동장 | 29 박물관 | 32 웰니스센터 | 33 미래관 |
| 34 국제학사 | 35 음악관 | 36 어린이집 | 37 100주년 기념관 |
| 41 실외테니스장 | 81 자동화온실 | | |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법학관 523호

Tel. 02-6490-6751~3 Fax. 02-6490-6754